

##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어린이변액유니버설보험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20세 ~ 70세	종신	종신	월납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0세 ~ 15세			

### 3.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이상

###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 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기본보험료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만원 단위로 납입가능하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 ①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변경,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납입기일부터 적용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 후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부시 미납입된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②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하다.

#### 다. 보험료 납입한도

##### (1) 기본보험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입나이	기본보험료
20 ~ 49세	보험가입금액의 1% ~ 2%
50 ~ 59세	보험가입금액의 2% ~ 3%
60 ~ 70세	보험가입금액의 3% ~ 4%

##### (2) 추가납입보험료

- ① 계약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최초 가입시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월정기 추가납입 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text{기본보험료의 } 200\% \times \text{가입경과월수} \\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③ ‘②’에서 가입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개월씩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6.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0년(120회 납입)(이하 “의무납입기간”이라 한다) 이내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 나.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이하 “월대체보험료”라 한다)과 수금비를 말한다. 다만,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수금비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납입시에 공제한다.

### 다. 자녀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후 :

자녀교육자금 발생 후의 위험보험료를 말하며, 매년 자녀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자녀교육자금에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

## 7.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가. 의무납입기간 이내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 나.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

계약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 다. ‘23. 기타 사항’ ‘나’항의 적용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범위가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체전 주 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납입하던 기본보험료를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본보험료로 한다.
- 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기본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 8.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기본보험료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의하여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 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 9.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의하여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월 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기본보험료가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도 감액하여야 하며, 이 경우 ‘8.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마.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0.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 가. 의무납입기간 이내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으로 한다.

### 나.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으로 한다.

### 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 11.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특별계정에 적립된 계약자적립금(이하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이라 한다)에서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 \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인출(감액)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12.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약관 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자녀독립자금 및 자녀교육자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당시에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 제4조 [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 1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 가. ‘10.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다’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기간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해당 경과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라 한다.) 이상인 경우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이를 ‘계약유지보장’이라 한다.
- 나. ‘계약유지보장’은 가입 시점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 보험기간 중에는 선택할 수 없다.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합산하여 항상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료의 미납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으로 인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미만이 될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 다.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 ① 해당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의 금액
  - ②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된 상태에서도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합산하여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60%이상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가입 이후 언제든지 서면으로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된 이후 재적용은 불가능하다. 회사는 ‘계약유지보장’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될 경우 계약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14. 계약자격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격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5. 계약자격립금 충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제외)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격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며,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나.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격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격립금의 인출은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 이내에 한하며, 인출 후의 특별계정계약자격립금 잔액은 50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과 인출 당시 2개월분의 월대체보험료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자격립금의 충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격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격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격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 16.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의 금액과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한다)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1)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실효된 경우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의무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 (2)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실효된 경우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수금비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나. ‘가’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연체이자 및 미납된 월공제액을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다. 변액보험은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라.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납입된 연체보험료(연체이자 제외) 중 경과기간별 미납된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마. ‘라’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가 완납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을,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 3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3영업일」,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3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로 한다.
- 바. 가입시점에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하고 ‘계약유지보장’의 종료를 신청하지 않은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계약유지보장 기준보험료’ 이상인 경우 ‘계약유지보장’이 자동으로 재적용된다.

## 17.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 적립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한다. 이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정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약관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마.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의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 (4)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적용한다.

### 나. 펀드의 유형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안정형:**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만기 국공채, 특수채 기타 제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안정형(설정일 2004년 10월 4일)”으로 한다.
  - ②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

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채권형(설정일 2004년 10월 04일)”으로 한다.

- ③ **주식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 ④ **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설보험의 “성장형(설정일 2004년 10월 4일)”으로 한다.
- ⑤ **Ko-BRICs주식형**: KOSPI200 인덱스와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Ko-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⑥ **BRICs주식형**: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BRICs주식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⑦ **Index혼합형**: KOSPI 200 인덱스를 추종하는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형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을 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펀드,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브릭스변액유니버설보험의 “Index혼합형(설정일 2008년 7월 21일)”으로 한다.
- ⑧ **글로벌리츠형**: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20% 이

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리츠형(설정일 2006년 4월 24일)”으로 한다.

- ⑨ **혼합간접형**: 국내외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 순자산(NAV)의 70% 이내에서 투자하고, 해외 주식형펀드에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한다.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변액 유니버셜보험의 “혼합간접형(설정일 2005년 6월 20일)”으로 한다.
  - ⑩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50%까지 편입하고, 국내 채권 펀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4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한다.
  - ⑪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 까지 편입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일)”으로 한다.
  - ⑫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한다.
  - ⑬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다만,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설정일 2010년 07월 29일)”으로 한다.
- (2) ‘(1)’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용되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3) ‘(1)’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다.

(4)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varepsilon_1$ )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varepsilon_2$ )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안정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7150685%)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29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0808219%)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9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26328767%)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30137%)	
글로벌 셀렉트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3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1794521%)	
글로벌 이머징마켓 혼합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3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1794521%)	
주식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5369863%)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45%
Ko-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30137%)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0945205%)
BRICs 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30137%)	
Index 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4610%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2630137%)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73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20013699%)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49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01356164%)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93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25493151%)	
토탈리턴 글로벌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0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3712329%)	
이머징마켓 채권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005%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의 0.0013712329%)	

(2)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1)’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 라.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나’에서 정한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중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된다. 다만,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합산하여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경과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다.
- (5) ‘(1)’ 내지 ‘(4)’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나’의 ‘(3)’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 (6) 회사는 ‘(4)’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다.
- (7) 회사는 ‘(4)’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6)’의 현금이전시 공제한다. 다만, 연4회에 한하여 펀드 변경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 (8)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로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마.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된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된다.
- (3) '(1)'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의 안정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바.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2) '(1)'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한다.

#### 사.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다만,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아. 초기투자자금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①'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 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 자.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차.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 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⑤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재적용된 경우
- (2)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한다.
- (3) 회사는 의무납입기간이 완료된 경우 계약자에게 ‘6.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나’에서 정하는 월공제액에 의해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되므로 보험료 미납입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공지한다.

### 카.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①’ 내지 ‘②’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1)’ 및 ‘(2)’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19. 자녀교육자금 계산시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에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출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E)}{A_{12} + A_0 - (I-E)}$$

-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r)$$

- (주)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 $Bi(-3)$  :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i(-2)$  :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i(-1)$  :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다.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 20.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23. 기타 사항’의 ‘가’에 따라 이체한다.)
-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교체 후 보험대상자 포함) 단,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제외]가 사망하였을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의한 자금이체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21.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매월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다만, 할인금액은 기본보험료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2.0%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10,000원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5%

## 2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한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다만,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중 ‘13. 계약유지보장에 관한 사항’ ‘다’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점부터 ‘계약유지보장’의 적용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주보험의 의무납입기간과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장된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주보험의 의무납입기간과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료는 주보험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되는 특약보험료는 납입중지기간 중에 공제된 특약보험료의 주보험 계약자적립금으로 충당된 부분으로서 주보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수금비 제외)되어 적립된다.
- 라. 납입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사’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월단위로 납입중지 횟수선택이 가능하며 총 납입중지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납입중지기간 중 ‘사’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 마.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기간의 종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 사.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산출방법서에 의해 보험료 납입 시에 한하여 부과되는 유지비와 수금비 제외) +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
- 아.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다만,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이후 보험기간 중 서면으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재신청할 수 있다.

## 23. 기타 사항

### 가. 납입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1)’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회 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 의무납입기간 이내

-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과 「납입일 + 제3영업일」 중 늦은 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월계약해당일」인 경우에는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납입일 + 제3영업일」인 경우에는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예정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예정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예정사업비(수금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③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 + 제3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후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 제3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교체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대상 계약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계약으로 해지되지 않은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신청 및 취소

- ① 계약자는 교체 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3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30일 전일까지 교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를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의 승낙일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전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교체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신청을 무효로 한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교체신청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이후에 회사는 교체신청서에서 알린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③ ‘①’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 담보의 유사유형 상품에 준하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①’에 의하여 회사가 승낙을 한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교체된 사항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다.
- ⑤ ‘①’의 교체 신청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변경(신청 취소) 할 수 있다.
- ⑥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승낙에 의해서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를 할 수 없다. (이하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한다)
- ⑦ 계약자가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

에 다음의 사유로 교체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 Ⓐ 회사가 교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 Ⓑ 교체신청시 계약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교체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 한때

####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 ① 교체 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교체 후 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한다.
- ② 교체 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후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의 적용

- ① 교체 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회사는 교체 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에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
- ② 회사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6)’에 따라 보장을 한다.

####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의 범위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의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변경에 의하여 교체전의 기본보험료가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범위를 초월하지 못 할 경우에도 교체 전 기본보험료를 교체 후 기본보험료로 한다.

####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교체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 등에 관한 통보

회사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3세가 되기 15일전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에 대한 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교체시 특약의 중도부가 등)과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4세가 되는 월계 약해당일 전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장이 종료됨을 계약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계약에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교체 전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의 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② '①'의 교체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은 교체 이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교체 후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한다.

(9)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새로이 부가한 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2)’의 ‘⑦’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새로이 부가한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 및 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중에는 일반계정에서 운용한다.

라. 중도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교체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가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교체시점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특약 중 회사가 지정한 특약의 중도부가(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특약에 한함)를 청약 할 수 있다.

## **마.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체결이후 보험기간동안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 **바.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사.**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자.**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및 보험계약 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

**차.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카.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